새 법령 소개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대부업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내 범죄 등의 발생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 · 관리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특수건물 화재에 대비하여 의무 가입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대상을 대물손해까지 확대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대부업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월 19일 시행

-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부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개인신용등급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통일적인 방법 · 절차 및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문구 포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월 19일 시행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및 대부계약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의 하락가능성 문구 포함(제9조제2항제5호 · 제6호 및 제3항제5호 · 제6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함.
–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제16조제1항 및 제2항)
대통령령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 현황 파악과 제도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제21조제1항 및 제2항)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대부업자 등이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부업자 등이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함.

도시공원 내 범죄 등의 발생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 관리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0월 19일 시행

- 도시공원 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 ·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제19조의2 신설)

도시공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월 19일 시행

도시공원 내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범죄나 안전사고를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안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이 설치 됩니다.

•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0월 19일 시행

-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9조의2).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조제1항, 제68조제1호 신설).

특수건물 화재에 대비하여 의무 가입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대물손해까지 확대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0월 19일 시행

-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교육시설 · 백화점 · 시장 · 의료시설 · 숙박업소 · 공장 · 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제4조제1항)
  현재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다른 사람의 사망 · 부상 등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보험 가입 기준일 세분화(제5조제4항)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함.
  –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 상향(제8조제1항)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의 경우 피해자 인당 50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대물 손해의 경우 화재 1건당 5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10월 시행법령 목록 (2017. 9. 27.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741호	법원행정처	10. 1.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농림축산식품부	10. 4.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21호	국토교통부	10. 12.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86호	국토교통부	10. 12.
5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2호	농림축산식품부	10. 14.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2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9.
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765호	행정안전부	10. 19.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81호	환경부	10. 19.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91호	국토교통부	10. 19.
10	건축법	법률	제14792호	국토교통부	10. 19.
11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4793호	국토교통부	10. 19.
1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794호	국토교통부	10. 19.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4830호	국민권익위원회	10. 19.
14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4817호	금융위원회	10. 19.
1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48호	금융위원회	10. 19.
1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8호	금융위원회	10. 19.
17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4785호	기상청	10. 19.
18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75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10. 19.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20호	금융위원회	10. 19.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96호	국토교통부	10. 19.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3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9.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0. 19.
23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4805호	행정안전부	10. 19.
2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72호	산림청,환경부	10. 19.
25	보험업법	법률	제14821호	금융위원회	10. 19.
26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4788호	고용노동부	10. 19.
27	산지관리법	법률	제14773호	산림청	10. 19.
28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4822호	금융위원회	10. 19.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4774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9.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42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9.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23호	금융위원회	10. 19.
32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4824호	금융위원회	10. 19.
33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4825호	금융위원회	10. 19.
3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07호	해양경찰청	10. 19.
35	은행법	법률	제14826호	금융위원회	10. 19.
36	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제14808호	소방청	10. 19.
3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09호	소방청	10. 19.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27호	금융위원회	10. 19.
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4789호	고용노동부	10. 19.
40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4828호	금융위원회	10. 19.
4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800호	국토교통부	10. 19.
42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4783호	환경부	10. 19.
4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84호	환경부	10. 19.
4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4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9.
45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14763호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10. 19.
46	해양경비법	법률	제14810호	해양경찰청	10. 19.
47	해양경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44호	해양경찰청	10. 19.
4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4804호	해양수산부	10. 19.
49	행정심판법	법률	제14832호	국민권익위원회	10. 19.
5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29호	금융위원회	10. 19.
5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99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26.
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9호	고용노동부	10. 28.

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웹페이지 (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